

2020 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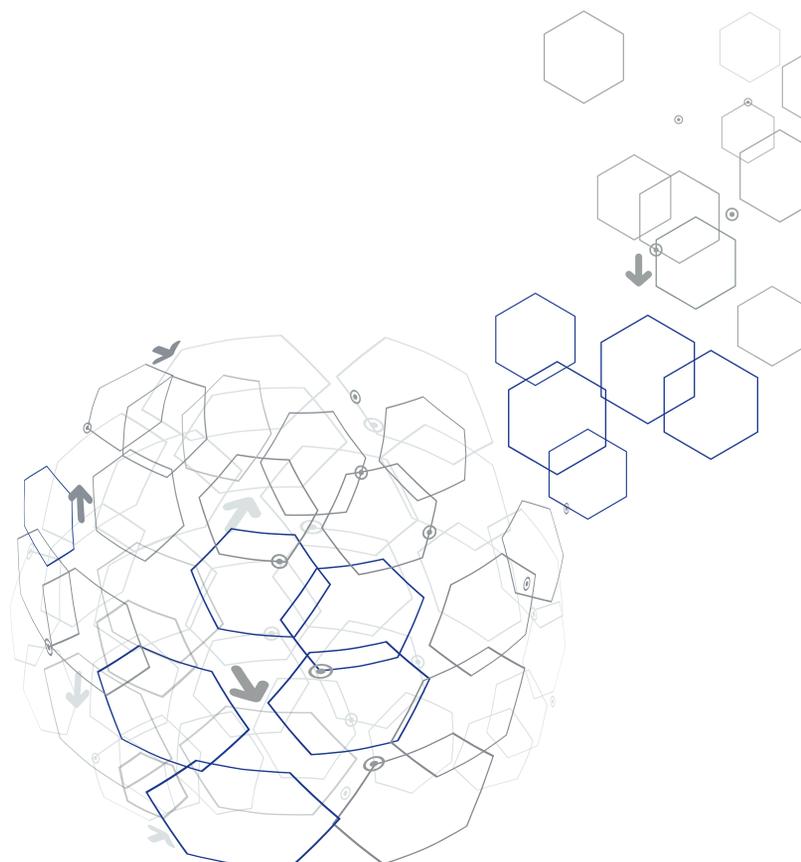
CERIK

하이라이트

9.11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 개인 유사법인의 탈세를 막기 위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신설
- 건설업 특성 고려하지 않아 다수 건설기업의 피해 불가피
-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의 철회 혹은 건설업종 제외 필요



CERIK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회재정부, 세법 개정안에 초과 유보소득 과세 신설

- ◎ 지난 7월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특별제한법」 신설 법안이 포함됨.
-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 세제 및 신탁 세제 개선, 주택 관련 세제 강화,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강화 등 기존의 세법 체계를 변화시키는 많은 사항이 포함됨.
- 특히, 기회재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 회피 등을 방지’하고자 신설 법안을 도입하였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2021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임.
- 기회재정부에 따르면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법인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임.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적용 배제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
| 과세 방식 |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배당 간주 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 비율 |
| 적용 기준 | 유보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 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적정 유보소득 = (유보소득 +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와 자본금 × 10% 중 큰 금액 |
| 간주배당 귀속 기간 |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 간주배당 지급 시기 |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 개인 유사법인이 간주배당 지급 시기에 개인 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
| 중복 과세 조정 | 실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 적용 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자료 : 기회재정부, 2020년 세법 개정안(상세본) 중 해당 부분 요약.

- ◎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 중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 비율을 곱한 것으로서 기회재정부는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임.
- 유보소득이란 법인이 경상·비경상적 활동으로 창출하는 소득 중 기업 내에 잔류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소득을 말하며, 적정 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이월결손금, 세금 등을 공제한 소득, 즉 총배당 가능 금액의 50% 혹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소득 중 큰 금액을 말함.
- 따라서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보다 큰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은 금액으로서 기회재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임.
- ◎ 과세 대상이 되는 유보소득은 2021년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를 결산하는 2022년 3월에야 실질적인 과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중소기업의 피해 불가피, 제도 운용상 논란 많을 듯

- ◎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를 막고자 하고 있으나, 개인 유사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초과 유보소득의 배당 소득 간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9%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이 49.3%를 차지함.
- ◎ 사내 유보금에 대한 기업과 과세 기관 간 시각의 차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법인의 미래를 위하여 쌓아둔 투자금인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 정부가 목표로 삼은 유보소득 과세 대상은 탈세를 목적으로 돈을 법인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해온 법인일 것임. 하지만 탈세와는 무관하게 법인의 사업 성격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경영 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도 많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연말에 발표할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과세 대상을 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활동의 사내 유보금과 탈세 목적의 사내 유보금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이 마련된다 해도 법인의 유보금 처리 문제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 또 하나의 문제는 신설 법안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점임.
 - 우리나라 법인의 99.8%(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가족 기업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이는 가족 이외의 주주에게 투자를 받기 어렵고, 주주이자 대표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이며,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법인으로서의 경쟁력 향상과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금융기관 자금 차입,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등 다양함.
 - 하지만 이번 초과 유보소득의 배당소득 간주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최저자본금 규정 폐지(2009년),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의 추가 인상 등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해 왔음. 특히,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음. 따라서 이번 제도 신설은 정부의 법인 전환 유인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개인 유사법인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음.
- ◎ 사내 유보금 과세가 새로운 조세의 신설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는 것은 법의 목적성과 부합하지 않으며, 유보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실체로서의 세법상 소득에서도 벗어나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법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면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는지,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유보소득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 또한, 유보금액이 실제 현금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회계상 실제로 현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도 심화될 수 있음.



다수의 중견 중소 건설기업이 과세 대상, 건설산업에 파장 클 듯

- ◎ 건설산업은 공공을 상대로 한 영업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업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1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공공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 건설공사 및 주택사업은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많고,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많은 건설 및 주택 건설기업의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음.
- ◎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행정안전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시공 경험과 경영상태 등이 포함된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경영상태는 회사채 혹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에 의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 중소 건설기업은 기업 규모로 인해 신용평가등급을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무비율로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더 좋은 경영상태 평가 점수를 얻기 위하여 유보금을 쌓아두는 사례가 많아, 유보소득세가 시행되면 대다수의 중소 건설기업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과중한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임.

PQ심사 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심사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
| 최근 연도 부채비율 (부채 총계/자기자본) | 업체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 22.0 |
| 최근 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체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 21.0 |
| 영업 기간 | | 2.0 |

자료 : 조달청, PQ심사 기준 중 별도 3 내용 요약.

- 조달청 사전적격심사(PQ) 기준상 경영상태는 수행능력평가 점수 중 15점을 차지하는 큰 평가 항목으로서 중소 건설기업 대부분은 만점을 받기 위한 기업 재무상태를 유지하고자 함.

- 경영상태 평가시 재무비율 산정은 현재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그리고 영업 기간을 감안하여 산출하는데, 유보금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비율을 높일 수 있음.
- ◎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경우, 유보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제도 신설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수의 대형 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개인 유사법인의 탈세를 막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된 많은 비상장 건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 다수의 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주택사업에서 택지 입찰 참여나 토지 매입은 필수적인 요소임. 이를 위해 기업은 예측하기 힘든 매입 시점을 감안해 유보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주택 건설은 그 사업 기간이 길어 단기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의 소요 자금이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내에 유보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큼.
- ◎ 건설업을 사업체의 형태로 보면, 다른 업종에 비해 법인사업자 비중이 매우 높음. 건설업의 특성상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인 전환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보소득세 과세는 기존 정책에 배치되고, 불합리함.
 - 2018년 기준, 전(全) 산업에서 법인사업자의 비중은 전체 사업자의 9.2%에 불과한 실정임. 제조업도 17.2%에 불과함. 반면, 건설업은 43.6%로서 법인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음.

산업별 사업자 형태 현황(2018년)

(단위 : 개사)

| 구분 | 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비중 |
|------|-----------|-----------|---------|----------|
| 전 산업 | 2,740,227 | 2,487,580 | 252,647 | 9.2% |
| 제조업 | 356,836 | 294,497 | 61,339 | 17.2% |
| 건설업 | 112,079 | 63,231 | 48,848 | 43.6% |

자료 : 국가통계포털.

- 건설업종의 법인율이 높은 것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요구받는 등 제도적인 유도장치 때문임. 또한, 정부는 건설공사의 무자격자 시공 등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법인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음.
- ◎ 기획재정부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을 위해 통상적으로 확보하는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인 사업 활동과 조세 회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기업들의 영업 및 사업 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



제도 철회 혹은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개선안 마련 필요

- ◎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음.¹⁾ 그럼에도 지금까지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내 유보금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임. 이를 감안할 때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투자 회피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높은 유보금과 유보율은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투자 여력이 크다는 건전한 기업경영의 지표로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 성장을 염두에 두고 법인사업자를 선택한 것인데, 이번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가 규제로 작용하여 기업이 법인 전환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됨.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 형평성을 흐트리고 경제 주체의 행위를 왜곡하는 법인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수익 간주의 신설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기획재정부는 이미 과세 신설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를 고려하더라도 건설업과 같이 다수의 대형 및 중견,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 프로세스와 사업 기간 등 건설업의 특성상 사내 유보금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설기업의 경우 수주 산업이라는 건설공사 특성과 사업 기간이 길고, 예측하지 못하는 대규모 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내 유보금을 지속가능한 영업과 사업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종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 또한, 적정 유보소득의 범위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적정 유보소득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함.
 - 우선, 초과 유보소득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소득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한편, 일률적으로 적정 유보소득을 정하기보다는 건설업과 같이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적정 유보소득의 범위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은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정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해석을 더욱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1)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포함되어 논란이 심화되었던 사안임.

김영덕(선임연구위원·ydkim@cerik.re.kr)